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(임이자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4155 발의연월일 : 2024. 9. 20.

발 의 자:임이자·김성원·김용태

김위상 · 최은석 · 우재준

최수진 • 유용원 • 이종배

박성훈 의원(10인)

제안이유

현행법 제정 이후 공인노무사는 노동 관계에서 근로자를 보호하고 사업장의 자율적인 노무관리를 지원하며 노동행정이 원활하게 운영되 는데 기여해 왔음.

그러나, 노동행정기관(노동청)에서 사건을 진행하는 도중 분쟁이 형 사사건으로 전환될 경우 공인노무사가 관여할 수 없다는 최근 대법원 의 판결로 근로자들이 공인노무사의 법률적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 당하게 되었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노동청에서 근로감독관으로부터 노동 관계 법령 위반에 관한 조사를 받는 경우 공인노무사가 조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.

주요내용

공인노무사의 직무범위에 진정·고소·고발사건에 관한 진술, 근로 감독관에게 노동 관계 법령 위반에 관한 조사를 받는 경우 등의 대행 또는 대리를 포함함(안 제2조제1항제1호 등). 법률 제 호

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공인노무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제1호 중 "노동"을 "노동·사회보험"으로, "진술"을 "진술 (진정·고소·고발사건에 관한 진술, 근로감독관에게 노동 관계 법령 위반에 관한 조사를 받는 경우의 의견진술을 포함한다)"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"노동"을 각각 "노동·사회보험"으로 하며,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6.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직무에 부수하는 업무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2조(직무의 범위) ① 공인노무	제2조(직무의 범위) ①		
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			
행한다.			
1. <u>노동</u>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	1. <u>노동·사회보험</u>		
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・			
신청・보고・ <u>진술</u> ・청구(이의	<u>진술(진정·고소·</u>		
신청・심사청구 및 심판청구	고발사건에 관한 진술, 근로감		
를 포함한다) 및 권리 구제	독관에게 노동 관계 법령 위		
등의 대행 또는 대리	반에 관한 조사를 받는 경우		
	의 의견진술을 포함한다)		
2. <u>노동</u> 관계 법령에 따른 서류	2. <u>노동・사회보험</u>		
의 작성과 확인			
3. <u>노동</u> 관계 법령과 노무관리	3. <u>노동·사회보험</u>		
에 관한 상담ㆍ지도			
4.・5. (생 략)	4. • 5. (현행과 같음)		
6. 사회보험 관계 법령에 따라	6.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직무		
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	에 부수하는 업무		
<u>신고·신청·보고·진술·청</u>			
<u>구(이의신청·심사청구 및 심</u>			
<u>판청구를 포함한다) 및 권리</u>			
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			
②・③ (생 략)	②・③ (현행과 같음)		